

대전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13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138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1065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남, 류시정, 김종훈

원고승계 참가인 AM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인애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10655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3.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70,572,386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29,427,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6. 3.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18, 19쪽의 '바.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판단' 부분)의 인용은 당심에서의 상계항변에 관한 예비적 판단[다음 제2의 나. 2)항 부분]에서의 인용에 한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1)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 제8쪽 제15행과 제13쪽 제14행 및 제16쪽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20쪽 제3, 13 내지 15행의 각 '이 사건'을 모두 '제1심'으로 각 고친다.
-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 2행의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데다가'를 삭제한다.
- 3) 제1심 판결 제19쪽 제2, 3행의 '자동채권인'부터 '피고에게 있는데,'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6행의 '볼 수 없고, 그 손해액에 대하여도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다.'를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 중 제21쪽 제4, 5행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를 '한편 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24. 11. 6. 원고의 위 채권 중429,427,614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채7059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이를 바탕으로 당심에서 위 금액을 범위로 하여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원고는 이러한 승계참가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본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는 2022. 1. 13. 회생폐지 결정을 받아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하자는 소급하여 치유되었고, ②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신탁수익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면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9호증,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③ C의 이사로 재직한 AD가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 AD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AN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④ 이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제1심 인정의 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평가금액,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2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는바,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대물변제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자인 H조합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 3억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러면서 들고 있는 을 제7, 8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 금액만큼 C의 소극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초과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 각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S2) (또는 원고의 직원인 AO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3))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데, ① 피고는 제1심에서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다가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변론종결일에는 AO의 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4), ②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는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상계항변 외의 부분은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의 태도로 인해 제1심에서 상계항변 관련 별다른 심리를 할 수 없었음에도 항소심인 당심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상계항변 관련 심리, 판단을 하게 되면 앞서 본 소송 완결의 지연 초래뿐만 아니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점, ④ 한편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에 원고나 S, AO 등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의 상계항변은 각하한다.

2) 예비적 실체 판단5)

예비적으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 먼저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S는 2022. 6. 9. 다중의위력을 보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만 처벌받았을 뿐이어서 이러한 형사판결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불법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심에서 피고가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기간인 287일 동안6) S(또는 원고의 직원인 AO가 피용자로서 원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가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7)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석봉 판사 이흥주 판사 이진영

별지

1)이 사건 대물변제부동산의 가치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02,101,624원 상당에

이른다.

2)원고의 대표이사이다.

3)피고의 2025. 4. 10.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4)제1심에서의 피고의 2023. 3. 21.자 답변서 제7 내지 9쪽, 2023. 5. 10.자 준비서면 제2쪽, 2023. 10. 23.자 준비서면, 2023. 11. 8.자 준비서면, 2024. 1. 5.자 준비서면, 2024. 5. 29.자 준비서면, 당심에서의 피고의 2025. 1. 17.자 준비서면 제9, 10쪽, 2025. 4. 10.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5)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의한다.

6)당심에서는 2021. 9. 18.부터 2022. 4. 27.까지 222일 동안과 2022. 6. 9.부터 2022. 8.

12.까지 65일동안의 총 합계 287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점유기간과 일수를 특정하고(피고의 2025. 1. 17.자 준비서면 제9, 10쪽 참조)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7)피고가 2021. 9. 18. 점유 개시를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을 제11호증 판결에서의 AP는 S가 아니라 AO이고(을 제11호증 제5쪽 마.항과 을 제12호증, 을 제11호증 제8쪽의 ②항 참조, 이러한 재판부의 지적에 대하여 피고는 새로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2025. 4. 10.자 준비서면 참조), 2022. 6. 9.의 이 사건 건물 침입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S가 아닌 AQ(당시 사단법인 AR협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 87억 원 상당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AQ는 위 AR협회의 회장이었다)였던 점(을 제3호증의 2 제28쪽 참조)에 비추어 설령 이후 피고가 지적하는 일자로서 피고가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2022. 8. 12.까지 다른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2025. 1. 17.자 준비서면 제10쪽, 을 제3호증의 2 제16, 28쪽 참조) 그것이 S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